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문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되더라도 심각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체생활을 하는 학동기에는 감염병에 대한 방어면역이 점차 약해지고,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감염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입학생은 본인의 건강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빠트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2025년도 중학교 입학 앞둔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자녀가 중학교 입학 전까지 11~12세에 접종해야 할 3종 [①Tdap(또는 Td) 6차, ②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③HPV 1차(여학생만 대상)]을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

※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다면,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예방접종을 받은 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예방접종관리] → [자녀 예방접종 관리] →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 완료**하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합니다.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접종받은 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합니다.
-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하다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합니다.
- '예방접종 금기자'는 접종(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합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

12세 이하 어린이(2012. 1. 1. 이후 출생자, 2025년 기준)는 국가에서 국가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니,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백신별 지원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백신: 18종

B형간염(HepB), 결핵(BCG, 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DTaP-IPV/Hib),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파상풍/디프테리아(Td), 폴리오(IPV),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PC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VAR), A형간염(HepA),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인플루엔자(IIV), 로타바이러스(RV)

뒷면계속

2024. 11. 25.
비봉초등학교장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확인방법 등 안내

1)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회원가입하고, 자녀를 등록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정보 등록

2) 등록된 자녀의 접종내역을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3)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 완료하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합니다.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접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접종받은 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만약, 전산등록이 어려운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합니다.
-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하다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합니다.

* 「의료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직접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해외 접종기록은 접종받은 외국 의료기관에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공식 사인 된 서류'를 발급(팩스 또는 이메일 등 이용) 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합니다.

4) '예방접종 금기자'는 접종(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합니다.

■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5) 지연된 예방접종의 일정은 다음을 참고하여 예방접종 의사 또는 의료진과 상담(예진 등)바랍니다.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또는 4차 접종을 10세 이후에 접종했다면 더 이상의 추가접종은 불필요합니다.
- DTaP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해 7~10세에 Tdap*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 백일해 백신 접종 금기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의사와 상담 후 Td 백신으로 대체 접종 가능